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2059

제출일자 : 2021. 12. 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보고이유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하였음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9조

3.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운영 개요

- 가. 지원대상 : 달성군 관내 만3~36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
나. 지원내용 : 유모차 1대 기본 6개월 대여(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민등록상 만 36개월까지 연장대여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추진
다. 대여장소 : 관내 장난감도서관 7개소
라. 사 업 비 : 26백만 원

4. 위탁운영 현황

- 가. 위탁기간 : 2018. 4. 24. ~ 2021. 12. 31.
나. 위탁사무 :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 운영 전반
- 유모차 대여·반납 등에 관한 업무
- 유모차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 유모차 대여사업 이용료 및 수입금 관리 등
다. 수탁기관 : (재) 달성복지재단

5. 재계약 경위 및 향후일정

가. 2021. 10. : 재계약 요청

나. 2021.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사결과 : 93.6점 재계약 의결(70점 이상시 적격)

다. 2021. 12. :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

라. 2022. 01. : 위·수탁 개시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 ① 군수는 달성군민 등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임신지원용품의 지원 사업
 3.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사업
 4. 육아용품의 구입·대여·지원 사업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별표]를 따른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